

2022년부터 달라지는

# 관세사법 및 관세법 개정 사항

2021. 12. 31

한 국 관 세 사 회

# 목 차

## 관세사법

1.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금지 ..... 1
2. 시험 방해행위 등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 1
3.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 2
4. 개업신고 의무 삭제 ..... 2

## 관 세 법

5. 구매대행자의 정의 명확화 ..... 3
6.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 3
7. 부당과소신고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확대 ..... 4
8. 소액채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 4
9. 가산세 감면대상 확대 ..... 4
10.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 5
11. 항공기 부분품 면세 감면기간 연장 ..... 5
12.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 ..... 6
13.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 6

## 목 차

- 14.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 7
- 15.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 7
- 16.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8
- 17.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 ..... 8
- 18.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 9
- 19.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예비 심사 근거 마련 ..... 9
- 20.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 ..... 10
-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혜택범위 확대 ..... 10
- 2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법령화 ..... 10
- 23.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 ..... 11
- 24.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 11
- 25.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12
- 26.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 ..... 12
- 27. 관세 통계 작성·공포 근거 마련 ..... 13

<첨부> 「관세사법」 및 「관세법」 신·구조문 대비표

# 관 세 사 법

## 1.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금지(관세사법 §3②)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통관업무 관련 금지행위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게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input type="checkbox"/> 금지행위 추가 ○ (좌 동)  ○ 통관업무를 소개·알선 받고 대가를 주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좌 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14쪽

## 2. 시험 방해행위 등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관세사법 §6의3②, §29②)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해당 시험 정지·무효 및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제재 강화 ○ (좌 동)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14쪽, 17쪽

### 3.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관세사법 §8의2 신설)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조회 ○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매5년) 시 <추 가>	<input type="checkbox"/> 결격사유 조회 ○ (좌 동)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14쪽

### 4. 개업신고 의무 삭제(관세사법 §10)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등록 ○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 등록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개업신고 ○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등록 ○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15쪽

# 관 세 법

## 5.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관세법 § 19)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구매대행업자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li> </ul>	<p><input type="checkbox"/> 정의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li> <li>○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li> </ul> </li> </ul>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19쪽

## 6.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관세법 § 37조의4)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 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거짓자료를 시정 제출하도록 요구</li> <li>○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하여야 함</li> </ul>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20쪽

### 7.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관세법 § 38의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신 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허위증명 등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징수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 은폐 등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21쪽

### 8.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관세법 § 4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일 0.025%)만 면제 (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상향조정 : 100만원 → 150만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22쪽

### 9.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 42의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 <input type="checkbox"/>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 시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사전심사 신청 전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

<시행일>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22쪽

### 10.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관세법 § 83①)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용도세율* 적용 절차 *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 신청서 제출 및 세관장 승인	<input type="checkbox"/>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 신청서 제출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24쪽

### 11.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기간 연장(관세법 § 89⑥)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율불균형 물품 ○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을 -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td>21년</td><td>22년</td><td>23년</td><td>24년</td><td>25년</td></tr> <tr><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 </table>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177개 품목 - 그 외 품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td>21년</td><td>22년</td><td>23년</td><td>24년</td><td>25년</td></tr> <tr><td>70%</td><td>60%</td><td>50%</td><td>40%</td><td>20%</td></tr> </table>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간 연장(3년) ○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 감면을 - TCA(민간항공기협정) 품목: 3년 연장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td>22~24년</td><td>25년</td><td>26년</td><td>27년</td><td>28년</td></tr> <tr><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 </table> - 그 외 품목: 현행유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r><td>21년</td><td>22년</td><td>23년</td><td>24년</td><td>25년</td></tr> <tr><td>70%</td><td>60%</td><td>50%</td><td>40%</td><td>20%</td></tr> </table>	22~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22~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100%	80%	60%	40%	20%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0%	60%	50%	40%	20%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26쪽



## 12.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관세법 §9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관세면제대상 정부용품 <input type="checkbox"/> 군수품 및 경호용품(제2호)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명확화 (제2호→제2호 및 제9호) <input type="checkbox"/> 군수품(제2호) -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input type="checkbox"/> 경호용품(제9호) -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26쪽

## 13.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 §106의2①)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input type="checkbox"/> 수입신고 수리일부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 <추 가>	<input type="checkbox"/> 관세 환급 대상 확대  (좌 동)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판매자 발행)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26쪽

#### 14.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 106의2②)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반품 시 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 ○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입·출국장 면세점 - 시내면세점 <추 가>	<input type="checkbox"/> 관세 환급 범위 확대 ○ (좌 동) ○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 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27쪽

#### 15.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 143)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 국제무역선·기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선박 추가 ○ (좌 동) ○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input type="checkbox"/>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 (외국물품인 경우 관세 미부과) ○ 선박용품·항공기용품 ○ 국제무역선·기내 판매물품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물품 추가 ○ (좌 동)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시행일> 2022년 1월1일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29쪽

**16.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법 §176의2)**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 (기재부→국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input type="checkbox"/>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기재부→국회)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시행일>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0쪽

**17.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 조사 권한 근거 마련(관세법 §227③)**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의무 이행의 요구  ○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문서로써 의무 이행 요구 가능  ○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 이행  <추 가>	<input type="checkbox"/> 조사 권한 근거 신설  ○ (좌 동)  ○ 세관 공무원에게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권한 부여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2쪽

### 18.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관세법 §23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통관보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반송 신고서, 신고 시 제출서류(원산지증명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li> <li>○ 「관세법」 의무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서 규정</li> </ul> </li> <li>○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li> <li>○ (좌 동)</li> </ul>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3쪽

### 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예비심사 근거 마련(관세법 §255의2②)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심사 절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input type="checkbox"/> 예비심사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요건 일부에 대한 예비심사</li> </ul>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4쪽

**20.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관세법 §255의2③)**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인의 혜택 <input type="checkbox"/>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신 설>	<input type="checkbox"/> 혜택정지 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사유) 자율평가 미제출, 변동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시행일>2022년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4쪽

**2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혜택 범위 확대(관세법 §255의3)**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우수업체의 혜택 <input type="checkbox"/>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input type="checkbox"/> 혜택 범위 확대 <input type="checkbox"/>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제공

<시행일>2022년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7쪽

**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관세법 §255의2⑤)**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공인의 취소 사유 ①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② 거짓으로 공인심사 요청  <추 가>	<input type="checkbox"/> 취소사유 명확화 ① (좌 동)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받은 경우 ③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④ 분할·합병 등으로 공인한 업체의 동일성 상실 ⑤ 혜택적용 정지 처분 5회 이상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2022년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35쪽

### 23.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관세법 §256의2 신설)

현 행	개 정
<p>&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li> <li>○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li> <li>○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li> <li>○ (제재) 미제출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li> </ul> <p>*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p>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 받은 사전전자정보부터 적용

☞ 신·구조문 대비표 : 41쪽

### 24.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관세법 §276)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제재) 등록 취소,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input type="checkbox"/> 벌칙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43쪽

25.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시정 요구 가능(30일내 이행)  - 미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억원 + 2억원(총 최대 3억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46쪽

26.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관세법 §276·§277)

현 행	개 정
<input type="checkbox"/> 1천만원 이하 벌금  <input type="checkbox"/>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위반시  <input type="checkbox"/>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input type="checkbox"/> 200만원 이하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벌금 → 과태료로 완화)  <input type="checkbox"/>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46쪽

## 27. 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관세법 §322)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관세청장이 작성·공표하는 통계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 화물에 관한 사항</li> <li>○ 입·출항한 국제무역선·기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외국무역 관련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p><input type="checkbox"/> 통계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li> <li>○ (좌 동)</li> </ul>

<시행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48쪽



<첨부-1>

「관세사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생략)</p> <p>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생략)</p>	<p>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 -----되고, 관세사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p>



1. ~ 4.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  
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  
조제5항·제6항, 제10조, 제10  
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  
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  
용한다.

② (생략)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  
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  
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  
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  
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  
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  
-----  
----- 제10조의2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제10조의2 -----  
---- 제13조의2 또는 -----  
-----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 ⑧ (생략)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6. (생략)

제29조(벌칙) ① (생략)

<신설>

④ -----  
-----  
-----  
- 제10조의2-----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10조의2-----  
-----  
-----

5. 6.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2. <u>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u> <u>를 하지 아니한 자</u></p> <p>3. ~ 6. (생략)</p> <p>제32조(조사와 처분) <u>제29조제1</u> <u>항부터 제3항까지의</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 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한다.</p>	<p><u>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u> <u>벌금에 처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32조(조사와 처분) <u>제29조제1</u> <u>항, 제3항 및 제4항</u>----- ----- ----- ----- -.</p>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관세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p> <p>가.·나. (생략)</p> <p><u>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u></p>	<p>제19조(납세의무자)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u>다. 다음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u></p> <p>1) <u>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u></p>

-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2. (생략)

⑥ ~ ⑩ (생략)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⑤ (생략)

<신설>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신 설>

제38조의2(보정) ① ~ ④ (생략)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 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보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



제42조(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략)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 8. (생략)

② (생략)

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50만원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 -----  
-----  
-----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  
-----.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생략)
-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4. (생략)

② 삭제

③·④ (생략)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

-----  
-----  
-----  
-----.

- 1. (현행과 같음)
- 2. ----.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  
-----  
-----  
-----  
-----  
-----  
-----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  
--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  
-. -----  
-----.

② 용도세율이 -----

하 “용도세율” 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③ (생략)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생략)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1. -----  
-----  
-----  
-----  
-----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9년 5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 일까지 100분 의 100	2022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 의 80	2023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 의 60	2024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 의 40	2025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 의 20
---	--	--	--	--

2. (생략)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신설>

3. ~ 8. (생략)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  
-----  
-----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 일까지 100분 의 100	2025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 의 80	2026년 1월 1일 부터 12 월 31일 까지 100분 의 60	2027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 의 40	2028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 지 100분 의 20
---	--	--	--	--

2. (현행과 같음).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  
-----  
-----  
-----.

1. (현행과 같음)

2. -----  
-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 8.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②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략)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 .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 이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  
-----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  
-----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⑦ (생략)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

-.

③ -----  
-----  
-----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외국물품-----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4개월 ----- 보세판매장 별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 ③ (생략)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절에서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 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채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2. 3. (생략)

⑤ ~ ⑧ (생략)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  
-----.

⑧ (현행과 같음)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사이버 물 -----  
-----  
-----  
-----  
-----  
-----

2. 3.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하며 -----  
-----.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① · ② (생략)  
<신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이 조에서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 제255조  
의7제1항-----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  
-----  
-----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4. (생략)

<삭 제>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의 공인)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

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

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에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⑦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 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 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신 설>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혜택 적용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

<신 설>

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256조의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우정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으로 정한 국가에

서 발송한 우편물 중 사전전자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통관우체국의 장은 사전전자 정보가 제출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제257조 본문에 따른 우편물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장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절차 및 반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① (생략)
-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2조(제27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 6.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77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제1항(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  
----- 제277조제5항제3호-----  
-----.

3의2. ~ 6. (현행과 같음)

④ -----  
-----  
---. -----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제4항·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또는 제213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  
-----.

1.·2. (현행과 같음)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

4. 제200조제3항-----  
-----



며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00조 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 8. (생략)

⑤ (생략)

제277조(과태료) ①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5.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 자료서 -----

--- 자에게는 -----

② 제37조의4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  
-----.

1. (생략)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40조제5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생략)
4. 제135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 7. (생략)
- ⑤ (생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1. (현행과 같음)
2. -----  
-----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3. (현행과 같음)
4. 제135조제1항 -----  
-----  
-----  
-----  
-----
5. ~ 7. (현행과 같음)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⑦ ----- 제6항-----  
-----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⑨ (생략)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25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생략)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신설>

-.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28조(청문)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55조의5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현행과 같음)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

① ~ ③ (생략)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삭제>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삭 제>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략)

3.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4. ~ 6. (생략)

7. 제3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 아. (생략)

자.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차. (생략)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8.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삭제>

차.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회계연도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의장이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우체국의장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로서 해당 우편물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전자정보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5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편물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00만원 이상에서 150만원 미만인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2항(제14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27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41조제1호·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